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소관을 경찰청으로 이관 등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27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현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5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0
3. 총괄 검토: 법 소관을 경찰청으로 이관	12
4. 추가적 검토사항	20
가. 정책협의회 소속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9조)	20
나. 피해자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 변경 및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추가 설치(안 제14조)	24
다. 중앙·지방권익보호기관 설치주체 변경 및 업무 추가(안 제15조)	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8.
3. 회 부 일 : 2024. 10. 10.

II. 제안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성착취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협의·조정기구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신속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현장출동 및 조사 후 피해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실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중앙피해

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됨을 고려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한 시·도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8조).

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인신매매등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관계부처와 신속한 정책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신고의무자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피해자권익보호기

관에 사례판정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경찰청장은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안 제15조제1항).

사. 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임무에 인신매매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을 추가함(안 제15조).

아. 시·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시·도경찰청에 둔다(안 제15조 제2항).

자. 경찰청장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카. 경찰청장은 3년마다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8조).

타.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45조).

과. 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7조).

하. 법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령을 여성가족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함(안 제10조, 제15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IV. 검토의견

1. 현행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제289조¹⁾를 개정하여 각종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2015년²⁾에 국회에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를 비준하였음.

그러나 「형법」 상 ‘인신매매’는 ‘매매(買賣)’에 한정되어 국제사회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보다 협소하고, 각 부처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성매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강제근로 등 인신매매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있을 뿐 개별법을 아우르는 인신

1)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해당 조문은 형법 제정 이후 2013년 개정 전까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로 규정되어 있었음.

「형법(법률 제293호, 1953.9.18.제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2015. 5.29. 국회 비준 동의, 2015.12. 5. 발효

매매의 정의 규정이나 총괄대응체계가 부재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2021년 4월 인신매매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행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신매매등”과 “인신매매등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제2조)³⁾,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3)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 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두며(제9조)4),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 및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제8조)5) 5년마다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며(제10조)6),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7)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각각 두도록 하여(제15조)8) 인신매매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고(제13조)9)

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다.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인신매매방지법」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5) 「인신매매방지법」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6) 「인신매매방지법」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7)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이하 생략)

8)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각 호 생략)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이하 생략)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며(법 제14조)¹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를 두고(제16조부터 제20조까지)¹¹⁾,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제22조)¹²⁾, 법률상담(제27조)¹³⁾, 의료비 지원(제28조)¹⁴⁾, 생계지원(제30조)¹⁵⁾ 및 귀국지원(제31조)¹⁶⁾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제33조)¹⁷⁾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함.

9)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10)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11) 「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0조(심리의 비공개)

12) 「인신매매방지법」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13) 「인신매매방지법」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14) 「인신매매방지법」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5) 「인신매매방지법」 제30조(생계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16) 「인신매매방지법」 제31조(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17)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¹⁸⁾를 조기에 구조·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2136-319)’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2025년 예산은 4억 100만원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320	291	401
· 인신매매방지 기반조성 - 정책협의회 운영, 인신매매등 방지 홍보 콘텐츠 제작, 실태조사 실시 등	320	111	167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 중앙권익보호기관 인건비, 운영비, 피해자 구조 지원(생계,의료,귀국,법률,취업지원) 등	-	180	234

자료: 여성가족부

18)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는다.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1)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식별지표 개발·고시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시설 평가 및 지도·감독 등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¹⁹⁾으로 변경하고, (2) 정책협의회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면서 장관급 회의에서 차관급 회의로 변경하며, (3) 중앙권익보호기관은 경찰청에, 지역권익보호기관은 시·도경찰청에 각각 두고, (4) 법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령은 여성가족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과 개정안 소관 변경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8조)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실시 (제10조)		
인신매매등 교육 실적 제출기관 (제11조)		
피해자식별지표 개발·고시 등 (제13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4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제27조)		

19)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조항	현행	개정안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		
피해자지원시설 평가 (제38조)		
지도 및 감독 등 (제45조)		
정책협의회 (제9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장관급 회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차관급 회의)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15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	경찰청 시·도경찰청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제33조)	여성가족부령	행정안전부령
지원시설의 업무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7조)	<u>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u>경찰청장</u> → 시·도경찰청,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여성가족부장관 → 여성인권진흥원	경찰청장 → 중앙권익보호기관
과태료 부과징수 (제50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자체 장

3. 총괄 검토: 법 소관을 경찰청으로 이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신매매등범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4% 큰 폭으로 증가함.

<2019~2023년 인신매매등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82	500	583	616	825

주: 인신매매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형법(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특가법(제13세미만 약취, 유인 등) 등 국가통계포털의 공표통계 중심으로 추산함.

자료: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2025년 2월 현재까지 해당 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등 법적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지역권익보호기관이 미설치됨에 따라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²⁰⁾

2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와 달리 중앙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한시적으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²¹⁾하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²²⁾하고,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상담, 신고접수, 구조지원비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등 현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신매매 업무는 성매매·성착취·노동착취 등 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성·외국인·인권·노동 관련 부서가 각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업무구조상 다양한 착취유형을 담당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전담인력·수행기관 확보가 어려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입장임.

실제로 인신매매등은 많은 영역에서 성매매·성착취, 노동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있음.

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21) 2023년 6월 「(임시)사례판정위원회 한시적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2023.7.13.)하였고 감사원은 임시사례판정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필요성을 인용(2023.8.18.)하였음.

22)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총 15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었음
- (23.9.4.) 3건, (24.6.27.) 8건, (24.10.11.) 2건, (24.11.25.) 2건

<부처별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 주요 사업>

부처	주요 지원업무
여성가족부	- 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구조, 상담, 치료, 자립·자활 등을 전담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장기보호시설인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 청소년 심리상담 및 지원시설 연계(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상담
법무부	-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가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로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 등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귀국보증금 폐지, 조기적응프로그램 개편 - 국내 체류외국인 출입국 상담 및 생활편의안내 서비스(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인권침해 등 범죄신고(1301)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회복 등 지원 - 시·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등 지원 - 아동학대 의심신고(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학대신고 등을 통한 상담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 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과 통역 서비스 등 제공 -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집중 점검, 외국인 노동자 대상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지출장 지도·감독 진행 - 고객상담센터(1350), 외국인력 상담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기본 정보 안내
해양수산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외국인 선원고충상담 지원사업 및 선원무료법률 구조사업 등 지원 - 외국인 선원을 위한 선원근로실태조사 실시, 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특별단속 시행 - 외국인선원 고충 상담창구 운영
경찰청	-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통해 인신매매등이 포함된 약취 및 유인, 경미범죄 중 약자배려 등에 의료비 지원, 지원시설 및 민간단체 등 연계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을 개발하여 성매매단속 성인, 불법체류자, 아동·청소년 등의 조사에 활용 - 각종 범죄신고(112),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운영
해양경찰청	- 반기별 전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지침 마련 및 매뉴얼 발간·배포 2023년도 인권침해 전담반 운영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3.3.27. 재구성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을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범죄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경찰청은 인신매매를 포함한 각종 착취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각급 경찰서 259곳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안전조치를 전담하는 피해자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청의 인적·물적 자원²³⁾ 및 수사경험으로 쌓인 전문성을 활용하면 인신매매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별 부처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착취 유형의 인신매매 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련 범죄 통계 등의 확보가 용이하고 다른 국가와의 수사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인신매매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 일반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에 소극적임에 따라, 17개 시·도 중 어느 한 곳에도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시·도경찰청에 지역권익보호기관

23) 2023년 기준 경찰인력은 총 131,046명이고 예산은 12조 4,548억원임. 전국 경찰서는 259곳, 지구대는 626곳, 파출소는 1,417곳임. (경찰청, “2023 경찰통계연보”, 2024.10.)

을 설치·운영하도록 할 경우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신매매 범죄 중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등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인신매매등의 다수가 여성과 아동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의 전문역량을 구축해온 여성가족부가 이 법을 소관하게 되었다는 점²⁴⁾,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대한 피해 방지법은 대부분 여성가족부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 차관급 부처인 경찰청장이 범부처 정책의 총괄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3년 확정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인신매매등범죄 3,236건 중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등범죄가 75.6%인 2,44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⁵⁾.

또한, 국내 인신매매관련 범죄(약취·유인) 피해자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63.8%)이 남성(29.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²⁶⁾,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등범죄(2,446건)

24)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법률 시대를 읽다” 2021 April vol.653, 2021.4, 65쪽

25)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소 및 지원시설 운영,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관련 예산사업명과 2025년 예산은 아래와 같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2159-332) 190억 3,700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사업(2159-436) 81억 2,300만원 등

26)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

* 5년간(2018~2022년) 국내 인신매매관련 범죄(약취·유인) 피해자 성비: (여성) 63.8, (남성) 29.7, (불상) 6.5 (% , 국가통계포털)

에서 19세 이하 아동 대상 범죄가 2,061건으로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약 5.4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²⁷⁾).

이처럼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는 여성, 아동·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²⁸⁾하는 여성가족부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보다 관할 업무의 성격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경찰청 소관의 법²⁹⁾은 경찰조직, 수사 및 범죄 처벌, 사회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이 대부분이고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와 관련한 법률이 없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관³⁰⁾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3.3.27. 5~6쪽.

28) 「정부조직법」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9) 2025년 2월 기준 경찰청 소관 법은 총 30건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수사·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관부처 “경찰청” 검색, <https://www.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cptOfiCd=1741000&eventGubun=060102#AJAX>)

30) 2025년 2월 기준 여성가족부 소관 법은 총 26건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검색, <https://www.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cptOfiCd=1741000&eventGubun=060102#AJAX>)

또한, 개정안에서는 경찰청장이 5년마다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받는 등 경찰청이 주관부처로서 인신매매등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관계 부처·기관간 업무를 조율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차관급 부처인 경찰청이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³¹⁾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결론적으로,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부처의 소관 법률, 담당 업무 및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현재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추진상황 및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국무부, 영국·호주·대만은 내무부 등에서 인신매매등 방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 인신매매등 방지 업무 현황>

국가	주관부처	관계부처
미국	○ 국무부(The Departmet Of State) - 대통령 산하에 ‘인신매매 대응 및 모니터링 다기관 협력체’를 설립, 20개 이상 정부부처 참석하고 국무부장관이 주재	○ 국토안보부 - 인신매매 방지센터 설립·운영,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발급 ○ 연방경찰청

31) 민간 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의견

국가	주관부처	관계부처
	- (기능) 정책결정, 정책연구, 피해자 지원, 수사지원, 인신매매방지 교육 등 ○ 국무부 「인신매매감사·퇴치국」 -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1~3등급 기준으로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발표(2001년 시작) - 국제 프로그램 운영, 정부간 협력, 공공 캠페인, 자원관리	- 피해자 식별 후 폴라리스 연계 ○ 법무부 - 수사, 식별 및 대응,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 - 피해자 증명서 발급 - 피해자 지원 ○ 국제개발청: 생존자 지원
영국	○ 내무부(Home Office) - 안전, 법질서, 비자, 이민 담당 부서 - 인신매매 담당부서 설치 - 전국연계체계(NRM)를 통해 피해자 연계, 지원 - 내무부 내 식별기관(SCA) 설치 (업무) 전국연계체계를 통해 피해자 식별 및 지원 (인원) 225(내무부 직원), 20~21년 200명 총원 (지원) 구세군과 연계 피해자 지원	○ 국경통제국 ○ 여권청 ○ 이민단속국 ○ 경찰청 ○ 소방청 ○ 국립범죄청 등
호주	○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 - 치안, 재난관리, 이민, 시민권, 다문화 담당 - 인신매매 부서간 위원회(IDC) 운영 (참여) 11개 기관 (기능) 행동계획 관리 감독, 효과성 정부보고 - 인신매매 및 노예제도 국가회의 운영 (참여) 정부, 시민단체, 기업, 노조, 학계 등 (기능) 주요 이해 관계자 자문	○ 호주연방경찰청 - 피해자 식별 및 사건수사, 정보 공유 - 피해자 확인 시 사회복지부 및 적십자 지원연계 ○ 국경수비대 - 보트 등 비자없이 불법으로 국경 유입 외국인 단속 ○ 호주연방 검찰: 사건기소 ○ 법무부: 법률관리
대만	○ 내정부(Ministry of the Interior) - 지자체, 선거, 치안, 소방, 출입국, 방재 등 - 인신매매방지 규제, 법규 및 지자체 관련 감독 - 인신매매방지 등 행정원(총리실) 조정위원회 (주관기관) 인신매매방지를 위해 직접 활용하는 기관으로 내정부(경정서, 입출국이민서, 해양위원회, 노동부, 법무부, 농업부, 외교부 등) (점점기관) 주관기관과 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국방부, 경제부, 문화부, 금융위원회 등	○ 입출국이민서: 부처간 자원조정, 진행상황 점검 등 사무국 역할 ○ 법무부, 경찰청, 해안순찰서: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 구조 등 ○ 노동부: 인신매매피해자 취업 지원, 노동권 보장 ○ 농업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시 노동권익 등 보호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인신매매방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로의 전달체계가 여성정책 부서로 특정화되어 외국인 근로자 착취 및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총괄·지원하는 행정안전부와 인신매매등 범죄 수사와 수사를 통해 발견된 피해자 지원·연계가 가능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등 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4. 추가적 검토사항

가. 정책협의회 소속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9조)

개정안은 정책협의회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변경하며, 협의회 위원 구성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있음(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기 위하여 <u>부총리 겸 교육부장관</u>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고용노동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6. 경찰청장

<신설>

7. (생략)

<신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 (생략)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경찰청장 -----

-----.

1. 교육부차관

2. 법무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보건복지부차관

5. 고용노동부차관

6. 여성가족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삭제>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제2항제10호 -----

-----.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u>여성가족부</u>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 - <u>행정안전부</u>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현재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실질적인 인신매매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장관급으로 구성되다 보니 회의일정을 잡기 어렵고 회의가 형식화될 우려도 있음. 실제로 2023년 법 시행 후 정책협의회는 2년간 총 2회(2023년에 1회, 2024년에 1회) 개최되는 등 개최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개정안은 법 소관을 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 경찰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역할을 부여³²⁾하고 있으므로, 지방

32) 「인신매매방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자치단체 지원 업무를 관장³³⁾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면 중앙과 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책협의회를 차관급 회의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 제정 당시 「인신매매·착취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912호)」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협의회를 두고 있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수 과다 등의 이유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³⁴⁾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정책협의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위원장) 소속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도할 때보다 정책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수용하는 입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12조(인신매매 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 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33)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⑧ (생략)

34)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장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중앙부처 간 및 지자체 내 협의·조정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나. 피해자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 변경 및 중앙인신매매등사 례판정위원회 추가 설치(안 제14조)

개정안은 피해자 확인서 발급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서 경찰청장
으로 변경하고, 확인서 발급 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심의·판정하기
위한 기구를 중앙권익보호기관과 지역권익보호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 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 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 ----- ----- <u>경찰청장</u> -----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 의·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 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 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 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 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 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	② ----- -----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 보호기관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 판정위원회를, 같은 조 제2항----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 -----중앙인신매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매등사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u>
③ <u>여성가족부장관</u> 은 <u>판정위원회</u> 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u>경찰청장</u> 은 <u>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u> -----.
④ <u>여성가족부장관</u> 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u>제15조</u> 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 <u>경찰청장</u> ----- ----- <u>제15조제1항</u> ----- -----.
⑤ <u>여성가족부장관</u> 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u>경찰청장</u> ----- ----- ----- ----- -----.

현행법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나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권익보호기관에 설치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들의 인력 및 조직 여건상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는 중앙권익보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한시적으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 12월까지 총 15명에 대하여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었음.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

발급시기	발급건수	성별(명)		연령대(명)		외국인*		피해유형
						국적	비자 유형**	
2023. 9. 4	3	여성	3	20대	2	필리핀	E-6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30대	1			
2024. 6.27	3	여성	3	20대	2	필리핀	E-6	성적 착취
				30대	1			
	1	여성	1	30대	1	태국	B-1	성매매, 성적 착취
	4	남성	3	30대	4	필리핀	E-8	노동력 착취
		여성	1					
2024.10.11	2	여성	2	30대	2	필리핀	E-8	노동력 착취
						미얀마	C-3	
2024.11.25	2	여성	2	20대	2	태국	B-1	성매매, 성적 착취

자료: 여성가족부

개정안은 법 소관 변경에 맞추어 피해자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으로 변경하면서 중앙권익보호기관에도 중앙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운영되지 않아 중앙권익보호기관에 한시적으로 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에도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운영되지 않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중앙판정위원회와 지역판정위원회의 업무 중복 및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업무 구분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확인서 발급권한을 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임시적으로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구성·운영중인 사례판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의 법적 안정성과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 중앙·지방권익보호기관 설치주체 변경 및 업무 추가(안 제15조)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중앙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도경찰청에 각각 두도록 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업무에 인신매매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u>여성가족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u>한국여성인권진흥원</u> 에 중앙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u>경찰청장</u> ----- ----- ----- ----- <u>위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u> 을 경찰청에 둔다.

<u>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u> 1. ~ 6. (생략) <u>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u> <u><신설></u> <u><신설></u> 8. 그 밖에 <u>여성가족부령</u>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u>예방·방지</u> 관련 업무 ② <u>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u>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u>에 둔다. 1. ~ 3. (생략) 4. <u>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u> 5. 그 밖에 <u>여성가족부령</u>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u>예방·방지</u> 관련 업무 ③ (생략) ④ <u>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u>	1. ~ 6. (현행과 같음) <u>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u> <u>8.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u> <u>9.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u> 10. -----<u>행정안전부령</u>----- -----<u>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u>---- ② <u>시·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u> ----- ----- ----- ----- ---<u>시·도경찰청</u>-----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u> ----- 5. -----<u>행정안전부령</u>----- -----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u> ----- -----
---	--

현행법은 중앙권익보호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³⁵⁾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지역권익보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 소관부처를 경찰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앙권익보호기관은 경찰청에, 지역권익보호기관은 18개 시·도경찰청에 두고,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9 -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인신매매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도경찰청에 두도록 하면 인신매매등 범죄 수사 및 경찰청 내 피해자보호팀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법적 미비상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법률에 직접 보조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방, 처벌 등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중앙·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청/시·도경찰청에 둔다”에서 “운영한다”로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안 제15조제4항에 따라 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³⁶⁾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도 위탁 운영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조문에 포함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기존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피해자 생계·의료·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중앙과 지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업무가 중복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음.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거나 중앙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중앙에서 사례판정위원회나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중앙권익보호기관과 지역권익보호기관의 성격 및 업무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률에 직접 보조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조직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조직 관리 통일성·일관성 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규정을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여성가족부는 현재 지역권익보호기관 미설치로 임시로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지역권익보호기관 기능 중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조속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가 필요하고, 실제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서는 경찰청 또는 시·도경찰청보다는 지역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재지 등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며, 개정안 문구는 행안부·경찰청 의견과 같이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한편, 민간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경찰은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고 경찰청은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4